

사회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감면하여 준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재 시세감면을 26.6%로 시행하여 온 쪼차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을 91년 1월 1일부터는 폐지하되, 97년은 시세감면을 13.3%로 축소 감면 조정하였으며,

넷째,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기존주택의 승계취득은 시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 사용된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자와 5년 이상 재래시장 임대입점 사업자의 재래시장 재건축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부동산 매매의 경우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시세감면율을 20/100에서 10/100으로 축소하였으며,

일곱째,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 각 조문에 단서로 규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경감 받은 후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 신고납부 또는 추징하도록 조례 조문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번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 개정으로 지방세 세금면제혜택은 장애인은 약 3억원, 서울特別市 시장 458개 중 202개소의 재래시장은 약 39억원이 경감이 되고, 검인계약서 사용으로 약 350억원이 증세가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에 등록된 6만 4,480대의 쪼차형 자동차세는 약 62억원이 징수되어 총 370억원의 세금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중요한 세목으로서 취득세는 97년에 서울特別市 일반회계 예산액 5조 8,900억원 중의 13%인 7,871억 7,400만원 규모가 되고, 등록세는 97년 예산 일반회계의 21%인 1조 2,158억원 수준으로 취득세는 96년보다는 7.5%, 등록세는 약 30%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

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이 원안가결되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538명”을 “2,554명”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5,348명”을 “5,733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동조제3호 증원정원중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에관한법을시행령 부칙 제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부칙 제2항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정원 339명에 대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하고 “자동차세를”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로 한다.

제7조중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

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7조의2중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9조중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 기 량	씨 씨 당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씨이하	14원	120원
1,500씨이하	14원	160원
2,000씨이하	15원	190원
2,500씨이하	16원	220원
3,000씨이하	18원	260원
3,000씨초과	20원	300원

제16조제1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하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이전등기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및 고용자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이전등기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사용승인일 또는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④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p>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8조제1항중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되는 경우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의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을 “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p> <p>제19조중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p> <p>제20조중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p> <p>제24조중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p> <p>제24조의2중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p> <p>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4의3(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p>	<p>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료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p>제25조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p> <p>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8조의2(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p>제3조(궤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적용예)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다.</p> <p>제4조(검인계약서사용에 대한 감면적용예)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검인을 받은 경우의 취득세와 등기신청한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p> <p>10.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05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特別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p>
--	--